

주택 ([]무상 /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

① 주택 (증여자[] / 취득자[]) 세대 현황

① 취득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또는 단체	
② 세대 현황 <small>※ 무상취득은 증여자 기준으로, 유상거래는 취득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small>	구분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1세대 포함 여부
	세대주				<input type="checkbox"/> 포함 <input type="checkbox"/> 제외
	세대원				<input type="checkbox"/> 포함 <input type="checkbox"/> 제외

② 신규 취득 주택 현황

③ 취득 주택 소재지 및 별장·고급주택 여부		주소		조정대상지역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부		별장·고급주택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부	
④ 종과세 제외 주택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호의 주택)							
⑤ 취득 원인		<input type="checkbox"/> 무상취득 / 유상거래 (<input type="checkbox"/> 매매 <input type="checkbox"/> 분양권에 의한 취득)									
⑥ 계약일				⑦ 취득일							
⑧ 취득 가격											
⑨ 취득주택 면적(m ²)	총면적	토지	취득지분	%	취득면적	토지	%				
		건물				건물					
⑩ 일시적 2주택 여부		<input type="checkbox"/> 일시적 2주택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③ 1세대 소유주택 현황 ※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합니다.

소유주택 수		<input type="checkbox"/> 1주택		<input type="checkbox"/> 일시적 2주택		<input type="checkbox"/> 2주택		<input type="checkbox"/> 3주택		<input type="checkbox"/> 4주택 이상	
⑪ 1세대 소유주택 현황 <small>※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small>	소유주택 현황	유형		소유자	소재지 주소	취득일	주택 수 산정 포함 여부*				
		단독·공동주택					<input type="checkbox"/> 포함 <input type="checkbox"/> 제외				
		'20.8.12. 이후 계약	주택분양권				<input type="checkbox"/> 포함 <input type="checkbox"/> 제외				
		'20.8.12. 이후 취득	주거용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포함 <input type="checkbox"/> 제외				
			조합원 입주권				<input type="checkbox"/> 포함 <input type="checkbox"/> 제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

④ 신규 주택 적용 취득세율

취득구분	종과세 제외 주택		무상취득			유상거래					
	규제구분	무상취득	유상거래	조정대상지역		법인 및 단체	개인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3억 이상				3억 미만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총 소유주택 수 (신규 주택 포함)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4주택 이상	
⑫ 취득세율	3.5%	1~3%	12%	3.5%	12%	1~3%	8%	12%	1~3%	8%	12%
별장·고급주택	<input type="checkbox"/>										

※ 향후 세대별 주택 수 확인 결과 신고내용과 다르거나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으나 종전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 취득자 구분"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 취득자가 개인인지 법인(「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을 말합니다)인지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2. "② 세대 현황"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신고 대상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합니다)으로 구성된 세대의 현황을 적습니다. 이 경우 다음 기준에 유의하여 적어야 합니다.
 - 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세대원란에 적어야 하는 대상
 - 1)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혼인했거나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다만, 미성년자가 아니면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녀는 제외합니다.
 - 2)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부모
 - 나.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1세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아, 세대원란에는 적지만 1세대 포함 여부에는 제외하는 경우
 - 1)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퍼센트 이상인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 2)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3. "③ 취득 주택 소재지 및 별장·고급주택 여부"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주소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별장·고급주택 여부를 적습니다.
4. "④ 종과세 제외 주택"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종과세 제외 주택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규정의 몇 호에 해당하는지를 적습니다.
5. "⑤ 취득 원인"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취득 원인이 무상취득 또는 유상거래(매매 또는 분양권에 의한 취득)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6. "⑥ 계약일"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증여계약일, 매매계약일 또는 분양권 계약일을 적습니다.
7. "⑦ 취득일"란에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계약일을,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부동산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적습니다.
8. "⑧ 취득 가격"란에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구입가격을 적습니다.
9. "⑨ 취득주택 면적"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토지·건물의 총면적, 취득지분 및 취득면적을 적습니다.
10. "⑩ 일시적 2주택 여부"란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로서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신고 대상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과 신고 대상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란에 표기합니다.
11. "⑪ 1세대 소유주택 현황"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을 포함하여 신고 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단독·공동주택, 2020.8.12. 이후 계약한 주택분양권, 2020.8.12.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소유자, 소재지 주소와 취득일을 적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소유주택 현황을 별지로 작성할 경우 유형, 소유자, 소재지 주소, 취득일 및 주택 수 포함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12. "⑫ 취득세율"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종과세 제외 여부, 취득 원인, 소재지(조정 대상 지역 여부) 및 1세대 소유주택 수 등을 확인하여 해당 세율을 표기합니다.